

자유언론의 역할과 책임

안 광 식

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언론의 세력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위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때로는 불행하게도 그 힘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유린, 명예를 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의도적이건 부지 중이건 잘못된 보도 또는 허위보도로 언론 침해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와 같은 「언론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주기 위해서 언론중재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언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여부를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가치와 생명일진대, 언론은 그 어려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으며, 만일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오보 또는 허위로 인권을 유린, 명예를 침해했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이유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 사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존재가치는 또한 사실이 왜곡되거나 진실이 부정되었을 경우 그 허위적, 오보적 사실을 정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미국의 한 신문평론지 「워싱턴 저널리즘 리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신문에서 정정보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한 주에 3번 내지 5번의 정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좋은 신문일수록 다른 신문들보다 더 많은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기자와 편집자들이 오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문의 영향이 보다 더 강해지고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져서 더욱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뉴스가치를 과장하고, 뉴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주변인물에 대한 인권, 명예,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곤 한다. 일부 주간지와 잡지의 경우는

배우와 탤런트의 사생활에 관하여, 특히 이성문제에 관한 기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솜씨는 신문이나 방송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보여진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는 또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의 산물이다. 「신문은 특히 개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권익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신문윤리강령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논평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과 잡지에서조차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언론침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언론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와 같은 책임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사명인 「진실과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보와 허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언론침해」를 보호 내지 구제하여 주기 위해서 그 존재가치와 의의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처리하도록 주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신청인 또는 신청내용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중재부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역할을 함에 있어 피해자나 언론사의 어떤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으며, 중재제도의 취지는 중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공평·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언론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중재제도는 또한 언론침해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중재를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비용의 부담 없이 권리구제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중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백한 허보나 오보 또는 언론침해에 대한 정정을 법원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는 최종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법원을 통하는 번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신청인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에 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좋은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된다. 중재위원회는 또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별하면서 정당하고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재의 취지가 있다.

중재제도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언론이 사소한 오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허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아무리 침해하여도, 그와 같은 사회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추궁하지도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의 측면에서는 이 중재제도가 생긴 초기단계에는 언론사의 불출석과 비협조가 비교적

빈번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요즘에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중재제도에 임하는 태도가 한결 향상된 것같이 보이면서,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는 오보에 대한 정정 경향이나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된다.

언론중재제도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은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언론사와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
-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역임
- 저술: 「신문과 정부와의갈등」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